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56)

2023. 9.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56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3. 8. 14.

다. 회부일 : 2023. 8. 21.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의 목적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 재계약하여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사무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수탁운영
-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 (5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사무
  -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 학생 임상 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연구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나. 소요예산 : 15,667,939천원 ('24년 예산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재난시 응급의료 활동 등 서울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라. 심의결과 : 적정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공공의료추진반 시립병원강화팀 전철(☎ 2133-9245)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위탁기관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재위탁 제12차, '19.2.1.~'24.1.31.)”의 수탁기간이 24년 1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동일한 수탁기관(서울대학교병원)과 “재계약('24. 2. 1. ~'29. 1. 31. (5년)<sup>1)</sup>”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다만, 본 동의(안)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제2항 본문) 하는 것과 달리,
- “해당 사무(보라매병원 운영관리)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sup>2)</sup>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계약”임에도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를 필요로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③~⑤ (생략)

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2) (의안번호08-00844)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가결 (2012-07-09)

○ 민간위탁 협약 연혁 (재계약10회,재위탁1회/ 총 수탁기간37년)

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방식
1차	'87.10.1.~'90. 9.30	서울대학교병원	수의계약
2차	'90.10.1.~'93. 9.30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3차	'93.10.1.~'94.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4차	'95. 1.1.~'97.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5차	'98. 1.1.~'00.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6차	'01. 1.1.~'03.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7차	'04. 1.1.~'06.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8차	'07. 1.1.~'09.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9차	'10. 1.1.~'12.12.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10차	'13. 1.1.~'16. 1.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11차	'16. 2.1.~'19. 1.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12차	'19. 2.1.~'24. 1.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 (공모)

○ 위탁 기관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종합병원)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 시설규모 : 대지 24,573㎡, 건물 78,459㎡(지상 11층 / 지하 2층)
- 허가병상 : 765병상
- 진료과목 : 25과목
- 주요장비 : 2,371종 3,734점
- 조직 및 인력
  - ▶ 조직 : 2부문 2국 5실 1연구소 25진료과
  - ▶ 인력 구성 : 정원 2,408명/현원 2,374명

##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 활동
  - 재난 시 응급의료 활동
  - 학생 임상 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연구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립병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곳으로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의료 및 보건 업무’를 주된 사무로 하고 있음(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3호 및 제6조제5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따라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운영관리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및 보건 업무를 주된 사무로 다룬다는 점에서 직영, 자치구위임, 용역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의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사료됨.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관리 및 운영	재계약	시설형	서울대학교병원	5년	적정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관리 및 운영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위탁유형 : 시설형
- 위탁기간 : 5년 ('24.2.1.~'29.1.31.)
- 소요예산 : 15,667백만원('24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연 도	총액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5,667,000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7,518,000 의료사회사업 등 1,891,000
		민간위탁사업비	의료장비 도입 등 6,258,000

### 3 민간위탁 운영 성과 및 재계약 적정성 평가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서울대학교병원)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의회에 승인 받으려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적 재계약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종합성과평가 (2022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로 대체) 결과 (①)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②,③,④,⑤)

#### **필요적 재위탁 공모 (재계약 배제)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7) )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③,④,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첫째, “서울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제12차)(’19. 2.1.~’24. 1.31)의 종합성과평가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서울시 시립병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로 대체되었으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 이에 따른 **종합평가점수는 총점 86.6점으로 75점 이상임에 따라 재계약 추진이 가능함.** 또한 22년 이외 '18년~'21년의 평가 결과 역시 모두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점수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총점	77.6점	84.1점	93.4점	93.3점	86.6점

- 둘째, “서울대학교병원”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총 평가 점수 89점으로 총점 70점 이상임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재계약 대상 수탁법인(서울대학교병원)이 아래 “필요적 재계약 배제 사유인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수탁법인(서울대학교병원)은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필요적 재위탁 공모 (재계약 배제)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7) )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④,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그 외에도 동 수탁법인(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19년~'22년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민간위탁(재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역량과 성과가 존재한다고 사료됨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 4 종합의견

- 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사무(보라매병원 운영관리)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sup>3)</sup>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해당하여 “재계약”임에도 보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동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업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의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사료됨.
- 이와 더불어 동 민간위탁 동의(안)의 재계약 대상 수탁법인(서울대학교병원)은 종합성과평가 (결과 86.6점/기준 75점이상)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결과 89점/기준 70점이상) 가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상회함.
- 그리고 그 외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상 “필요적으로 재계약”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인 시정조치 불이행, 주요 비위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에 해당하여 “재계약 불가”라고 판단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의안번호08-00844)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가결 (2012. 7. 9.)